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법 제17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태희

●법률 제10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

부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유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당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

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4항 신설).

나. 노동부장관은 퇴직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제5항 신설).

다.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명시함(법 제19조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